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상정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전부개정 (법률 제9758호, 2009. 6. 9. 공포·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변경함(안 제명).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이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·정비함.

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- 특이사항 없음	- 특이사항 없음

- 4. 토론요지
 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 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"를 "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라 한다)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사용경비"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·제3조 및 제4조 중 "농업기반시설"을 각각 "농업생산기반시설"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성	제554호
의	결	2010. 3. 19
년윝]일	(제159회)

제출년월일: 2010. 2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「「농어촌정비법」이 전부개정 (법률 제9758호, 2009. 6. 9. 공포· 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 규정이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(안 제1조).
- 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변경·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).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"를 "부천 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라 한다)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사용 경비" 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·제3조 및 제4조 중 "농업기반시설"을 각각 "농업생산기반시설" 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외 사용경비를 장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표

쳙 했 개 정 안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 비법 |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 법 |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 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라 한다)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한다)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"농 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업기반시설"이라 한다)를 농업 등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라 한다)를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사용 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경비"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관 사용경비"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적으로 한다. 하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장이제2조(적용범위) -----관리하는 <u>농업기반시설</u>의 목적 외 -----<u>농업생산기반시설</u>---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. 제3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제3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) 위)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-----경비의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에 따른다. 제4조(징수) ① (생 략) 제4조(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기반 ② -----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 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현 행

제6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) 제6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)

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개 정 안

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

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
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

<u>있다.</u>

② (현행과 같음)